

한다). 18세 또는 19세인 자로서 4월 30일 이후에 졸업을 한 경우에는 그 해의 11월 1일까지는 제외된다.

11) 장애인 보호자(carers)

장애인과 거주하며 장애인 수당 또는 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주 평균 35시간 이상 보살피 주는 사람은 거주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를 보살피 주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수에 포함된다.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동거 부부의 경우도 같다.

또한 주급 36파운드 이하를 받는 자로서 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자도 거주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수감자(people in prison)

구금 또는 수감되어 있는 자는 거주자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council tax를 체납하여 구속된 자는 제외되지 않는다.

13) 외교관(diplomats)

외교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와 부양가족도 거주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경감율 적용대상의 확인

매년 council은 경감율의 적용 대상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council은 신고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경감율 적용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고서를 반송할 필요가 없다.

Council은 경감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고지를 받은 납세자가 경감율의 적용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council은 2월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이에 불복하거나 2월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때에는 평가법원(Valuation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를 한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중지되지 않는다.

VI. 비과세

1. 비과세 대상 주택

council tax의 비과세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학기